

# 연산 서희스타힐스 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각 기관별 추천 기준에 따른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보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신청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 .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며, 당첨일 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분양일정 및 안내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135-227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24층, 주 개동, 총 612세대 중 일반공급 104세대[특별공급 세대(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0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0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1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세대, 생애최초 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구분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특별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소계			
민영주택	75.8564A	75A	75.8564	17.5054	93.3618	46.2008	139.5626	4
	84.8526A	84A	84.8526	19.8690	104.7216	51.6800	156.4016	3
	84.9422B	84B	84.9422	20.2402	105.1824	51.7346	156.9170	3
	합 계							10

### ■ 분양일정(예정)

※ 입주자 모집공고는 21.1.29日 예정임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해당, 기타지역)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정	2021년 2월 8일(월)	2월 9일(화) ~ 2월 10일(수)	2월 15일(월)	2월 19일(금)	2월 20일(토) ~ 2월 26일(금)	3월 2일(화) ~ 3월 4일(목)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비대면 현장 및 우편 접수	당첨자 1인 방문 (10:00~16:00)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10:00~14:00)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홈"검색	■ 당사 견본주택 -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1498-1번지 1층 ■ 제출 서류는 홈페이지 참조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로 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

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I. 특별공급 신청일정 및 자격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대상	예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1 3
		부산광역시	2 (75A) 6
		경상남도	1 (84A) 3
		울산광역시	1 (84B) 3
		중소기업근로자	3 9
		장기복무 제대군인	1 3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3
합 계		10	30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배정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 건/ 자격제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li>-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ul>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 및 제4호)<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 주택공급신청자</li><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ul></li></ul>

	<p>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p>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85m<sup>2</sup> 이하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sup>2</sup>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85m<sup>2</sup> 초과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m<sup>2</sup> 이하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고, 최초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85m<sup>2</sup> 이하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sup>2</sup>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85m<sup>2</sup> 초과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m<sup>2</sup> 이하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고, 최초 가입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m <sup>2</sup>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 <sup>2</sup>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 <sup>2</sup>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sup>2</sup>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10세대

##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국가유공자), 3호(국가보훈대상자), 8호(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장애인,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 추천기관

- 장애인 : 부산시청 장애인복지과, 울산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경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 운용과

##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I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 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2.8(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 '청약홈' 검색)</li> </ul> </li> <li>• 사업주체 견본주택(인터넷 취약자에 한함)</li> <li>- 주소 :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1498-1번지 1층</li> </ul>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구분	선정 방법
당첨 관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는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기간 내에 있는 자는 본 아파트의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li> <li>•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li> <li>•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li> </ul>

---

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인터넷 접수([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접수가 어려운 자가 견본주택 현장방문 청약접수 시 사업주체는 제출된 신청자격 확인서류를 확인(검증)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면 신청접수가 불가합니다. 또한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에 관련된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현장방문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부산시 연제구는 비투기과열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당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이며 당첨자(계약자)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불가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소유권이전등기일,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까지 제한됩니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 포함) 단, 상속은 제외합니다.
  - 상기 내용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기재사항 오류 시 관계법령을 우선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V. 분양 문의 및 기타사항

- 견본주택 위치 :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1498-1번지 1층
- 분양문의 : ☎ 051-868-3845
- 인터넷 홈페이지 : [www.yeonsan-fore.co.kr](http://www.yeonsan-fore.co.kr)